

이사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세아홀딩스(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회사 정관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성

1.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의사록을 기록, 유지하고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한 진행 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 2월, 5월, 8월, 11월 세 번째 금요일에 본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집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 영업일로 한다.
3. 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5조 소집권자

1.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정관 제30조 2항에 정한 순서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이사회상정(안)(SH-A-120-F3)을 작성하고 이사회의원 부의요청서(SH-A-120-F2)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집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제6조 소집 절차

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소집일의 1일 전까지 서면, 구두,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장 회의

제7조 의장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회장의 유고 시 대표이사인 이사, 이사인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동 순위의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정족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3장 결의

제9조 결의 방법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보다 강화된 결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의 사항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 3)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8)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9)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 10) 이사, 감사의 보수
 - 11)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연간 경영계획 승인
 - 2) 신규사업의 진출

-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임원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7)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 8) 중요 조직 개편
 - 9) 중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10)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11)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 12)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2.5% 이상의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 2) 중요 계약의 체결 및 해약
 - 3)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4) 중요 결손 처분
 - 5) 신주의 발행
 - 6)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5% 이상의 신규차입
 -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8) 준비금의 자본 전입
 - 9) 전환사채의 발행
 -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1) 대규모 자금 조달 및 신규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 1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13) 자기주식의 소각
- (4) 기타
- 1)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
 -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3) 이사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회사의 임원 겸임
 - 4) 중요 소송의 제기와 화해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업무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 (4) 준법지원관련 활동의 운영실태
-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3. 상기 결의사항의 부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안 및 보고사항 이외의 사안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되, 대표이사는 개별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5)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6)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7)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절차

제12조 의안 설명

의안의 설명은 의안의 부의를 요청한 이사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제13조 의견 청취

1. 의장은 회의 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감사 및 준법지원인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1.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에는 결의서(SH-A-120-F4)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회 주관부서로 송부한다.
2. 간사는 이사의 발언의 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각 이사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받아 이사회에서 정한 안전한 장소에 원본과 부분을 보관한다.
3. 이사회 주관부서장은 의사록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4.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 또는 발급은 이사회 주관 부서장이 이를 관장한다.
5. 이사회에 출석한 임직원은 부의 내용에 관하여 기밀을 지켜야 하며,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최근의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력) 제정 2001.07.01
개정 2015.11.20
개정 2021.05.21